

2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파리지사)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주요 변경사항

1) 위원회 시행 규정(EU)2022/158 미국에서 수입되는 냉장, 냉동 또는 가공 이족류 연체동물, 극피류, 피낭동물 및 해양 복족류에 관한 시행 규정(EU) 2020/1641의 수정

- 규정(EU) 2017/625는 인간과 동물이 직접 또는 환경을 통해 노출되는 위험을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칙의 준수를 검증하기 위한 공식 통제 수행에 대한 일반 규칙을 규정함.
- 특히, 규정(EU) 2017/625는 식용 식품을 포함하여 제3국 또는 그 지역의 동물 및 상품의 EU 가입에 대한 일반 조건을 규정함. 규정(EU) 2017/625의 129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3국 또는 그 지역에서 적용되는 조치가 해당 규정의 제1조 2항에 언급된 특정 규칙에 규정된 요건과 동등하다는 것을 제3국이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제3국은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함.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제3국 또는 지역의 동물 및 상품의 연합 가입을 통제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히 해당 물품에 수반되는 공식증명서 또는 증명서의 성격과 내용, 특히 해당 물품의 연합 가입에 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
- 위원회 시행 규정(EU) 2020/1641에 따라,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워싱턴주에 적용된 조치들은 살아있는, 냉각된, 냉동된 또는 가공된 이매패류 연체 동물, 극피동물, 피낭동물 및 해양 복족류는 규정(EU) 2017/625의 1조에 언급된 식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요건과 동일함.
- 시행 규정(EU) 2020/1641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살아있는, 냉장, 냉동 또는 가공된 이매패류 연체동물, 극피동물, 피낭동물 및 해양 복족류에 대한 모델

공식 증명서를 설정함. 모델 공식 인증서는 공식 검사관이 해당 상품의 생산 및 시장 출시에 적용되는 조치가 규정(EU) 2017/625의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식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조건과 동일함을 인증하도록 요구함.

- 식용으로 의도된 살아있는, 냉장된, 냉동된 또는 가공된 이매패류 연체동물, 극피동물, 피낭동물 및 해양 복족류를 연합으로 수출하는 책임이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합의한 조치에 따라, 이 모델은 시행 규정(EU) 2020/1641에 명시된 공식 인증서는 해당 상품을 연합으로 수출하기 위한 적절한 형식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 특히, 모형공인증서는 화물의 출발일을 알려야 함. 또한, 상품의 식용 소비에 대해 인증되었는지 또는 최종 소비자에 대해 인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시행 규정(EU) 2020/1641에 확립된 모델 공식 인증서의 공중 보건 요구 사항 외에도, 사람이 섭취하기 위한 유럽 위원회 시행 규정(EU) 2018/1882에 열거된 종의 살아있는 이매패류 연체동물과 연합에서 추가 가공을 하기 위한 연체동물의 동물성 제품은 적절한 동물 건강 증명서가 포함된 공식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연합에 입국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연합법률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보장을 제공하는 동물보건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델 공인증명서는 제6조 1항, 2항, 제7조 1항 및 제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합 가입을 위한 일반적인 동물보건요건을 포함해야 함. 위임된 규정 (EU) 2020/692 및 해당 물품의 연합 가입을 위한 특정 동물보건 요건 및 위임된 규정(EU) 2020/692조 제169조 1항 및 2항에 규정되어 있음.

□ 시사점

- 아시아국에서 EU로의 이매패류 수출은 계속 증가 중이며 유럽인들에게 생소한 먹거리였던 해조류가 최근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유럽에서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받기 시작함. 한국산 해조류 유럽 수출도 증가하는 발걸음에 맞춰 관련 규정과 해당 규정들이 요구하는 수출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출처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2022R0153&qid=16488679461>

1. 통관 동향 등 이슈

- 가능한 적은 첨가당 및 유리당 사용 권고

- EFSA의 과학자들은 식단에 포함된 설탕과 건강 문제와의 잠재적 연관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완료했음. 이번 평가의 자료들은 유럽의 국가 공중 보건 당국이 소비자들을 위한 향후 조언을 업데이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이 평가를 수행한 EFSA 영양 전문가 패널은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식단의 일부로 첨가당 및 유리당 섭취가 가능한 낮아야 한다는 결론을 지었음. 이것은 현재 유럽식품안전청의 권고사항과 일치함. 원래 이번 평가의 목표였던 식이당의 허용 가능한 상한 섭취 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로 인해 설정할 수 없게 되었음.
- 우리의 식단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첨가될 수 있는 설탕의 다양한 범주와 원천을 포함함. '첨가당'은 식사 준비용 설탕으로 사용되는 정제된 설탕임. '유리당'은 첨가당 및 꿀, 시럽, 과일 및 야채 주스, 주스 농축액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당류를 포함함. '전당'은 과일, 야채, 그리고 우유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식단에 존재하는 모든 당류임.
- 지난해 의견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에서 받은 의견은 EFSA 영양 전문가 과학자 패널들이 연구의 중요한 측면을 다듬고 명확히 할 수 있게 해주었음. 첨가당과 유리당 섭취량이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인 사람들에게 이 범위의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성 질환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음. 또한 제한된 데이터로 인해 전체적으로 첨가당 및 유리당으로 분류되는 설탕의 효과를 비교할 수 없었음.
- 설탕 소비는 치아우식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비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 대사 질환과 함께 설탕이

첨가된 음료, 주스 및 꿀을 섭취하는 다양한 정도 관련이 있음. 비록 당분의 기여도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식품 기반 식이지침을 세울 때 국가 당국에서 설탕 섭취에 대한 다른 중요한 기여자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사탕, 케이크, 디저트, 단 우유와 밀크셰이크와 같은 다른 달콤한 음료와 요거트는 제한된 데이터 때문에 평가될 수 없었음.

-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은 2017년에 EFSA에 식이당 과다 섭취로 인한 소비자의 잠재적 건강 위험을 평가해 달라고 원래 요청했었음.
- 스웨덴 식품청은 이러한 식이당의 안전성 평가는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며 다른 관련 과학 기반 보고서들과 함께 북유럽 국가들의 설탕 섭취 권고와 식품 기반 식이요법 지침을 검토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호평함.
- 이번 EFSA의 검토가 매우 광범위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향후 식이당의 허용 가능한 상위 섭취 수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격차와 연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음. 이번 조사 패널은 3만 권이 넘는 출판물을 심사했기 때문에 연구원과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분야를 파악했음. 연구에서 얻은 개별 인적 데이터의 풀링과 재사용은 앞으로 중요한 정보 출처가 될 것임. 연구는 식이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임상 및 지역사회 개입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결론 지음. 마지막으로, 섭취량을 평가하기 위한 검증된 방법과 식이 설탕 및 그 출처에 대한 보고 지침 및 정의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함.

2. 변동사항

- 모든 식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식이당의 허용가능한 상한섭취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유럽식품안전청의 영양 전문가 패널이 최소한 적게 섭취하는 것을 권고했음. 부족한 데이터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연구가 진행될 예정임. 건강한 식품 섭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유럽에 맞춰 수출되는 식품의 당류의 첨가율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출처 : <https://www.efsa.europa.eu/en/news/adding-sugars-shd-be-avoided>

3. 기타 주의사항 등

- EU, 에틸렌옥사이드(EO)에 대한 국경 검역 강화

- EU 식품안전(잔류농약, 중금속, 세균 등) 기준치를 초과하여 공중보건에 위협의 소지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국경검역 및 검역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 관련규정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793](#)

- 적용 대상 한국산 식품 품목 : 해당 규정 (29) 항목
 - **(CN코드 1902 30 10)** 속을 채운 경우를 제외한 건면류(Dried, prepared pasta excl. stuffed) / 라면 등 (세관에 따라 떡볶이, 당면, 소면 등도 대상이 되고 있음)
 - **(CN코드 1302)** 식물수액(sap) 및 추출물(extract) /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 펙티산염(pectate) / 한천 및 식물성 점질물 혹은 점증제(thickener) / 인삼, 홍삼 제품류
 - **(CN코드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 두부, 유자차, 김말이, 키트제품 등 다수 가공식품
- 통관 및 검역조건
 - 각 화물은 샘플링 검사결과 EO 잔류허용기준치가 EU기준에 부합한다는 정부 발행 공식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지참
 - EO 검사성적서와 함께 각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2월)

- 인스턴트 라면, Instant noodles (2022.02.16.)
 - 통관번호 2022.0906
 - 성분부적합으로 독일에서 검역됨.
 - 2-클로로에탄올 검출됨.
 - 독일에선 남은 재고 없으며 소비자 리콜됨.
- 이 외에도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에서 검출 및 처리중.

- 참치, Thunnus albacares (2022.02.18.)
 - 통관번호 2022.0969
 - 온도 관리 문제로 스페인에서 검역됨.
 - 아직 시장 유통 전이고 처리 전임.
- 인스턴트 라면, Instant noodles (2022.02.22.)
 - 통관번호 2022.1014
 - 성분부적합으로 노르웨이에서 검역됨.
 - 2-클로로에탄올 최대잔류한계치 초과 검출됨.
 - 폐기 처리됨.
- 인스턴트 라면, Instant noodles (2022.02.25.)
 - 통관번호 2022.1119
 - 성분부적합으로 노르웨이에서 검역됨.
 -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됨.
 - 폐기 처리됨.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 시사점

- 특이사항 없음.